

## 2. 보수규정

#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(법인사무처 제외)은 학교법인 꽃동네 현도학원 정관 제41조와 제69조에 의거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교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2011.7.1. 자구수정)(2021.6.22. 개정)

제2조(적용범위) 교직원의 보수는 법령 및 정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보수”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
2. “봉급”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.
3. “수당”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.
4. “승급”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또는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.
5. “보수의 합일계산”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.

### 제 2 장 보 수

제4조(보수) 교직원의 보수는 연봉으로 정하며,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연봉계약제운영규정에 따른다. (2018.6.22 자구수정)

### 제 3 장 호봉획정 및 승급

제5조(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)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이를 시행한다.

제6조(초임호봉의 획정) ① 교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.

② 초임호봉은 본 대학교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경력년수를 합산하여 획정한다. 단,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것에 대하여만 획정한다.

③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.

제7조(호봉의 조정) 재직 중 학위 또는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는 호봉을 조정한다. 다만, 휴직, 정직 또는 직위 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시에 조정한다.

제8조(승급) ① 교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따로 정한다. 직원의 경우, 신규채용 후 시초 승급에 필요한 기간을 만 10개월 이상으로 한다.

② 승급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시행한다.

제9조(특별승급)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승급 할 수 있다.

제10조(승급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시킬 수 없다.

1. 공상에 의하지 아니한 40일 이상의 결근 자
2. 징계처분,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
3.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
정직 : 18월, 감봉 : 12월, 근신 또는 견책 : 6월
4. 인사고과가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자

제11조(승급의 특례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급에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연구출장기간, 다만, 승급의 시기는 연구출장기간의 종료일로 한다.
2.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
3.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로서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는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
4. 삭제 (2004.3.2.)

## 제 4 장 보수지급

제12조(보수지급일) 보수는 연봉 총액의 12분지 1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. 다만,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제13조(보수계산) ① 월 보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의 대가로 한다.

② 신규채용, 복직, 승급 및 감봉의 경우에는 임용상에 기재된 일자를 기준하여 그 월액을 날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. 다만, 휴직, 면직, 퇴직의 경우에는 그달 7일 경과되었을 경우 당월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.

제14조(휴직기간중의 보수)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.

- ① 휴직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한 자, 또는 복직 후 휴직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학교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자는 휴직 중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- ② 연구출장전 이 학교에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교원은 출장 1차년에 한하여 봉급 전액을 지급하며, 근무년수가 3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반액을 지급한다.
- ③ 삭제(2004.3.2.)
- ④ 병역법 규정에 의한 징집의 경우, 천재지변, 전시, 사변,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⑤ 국가기관, 국제기구, 외국기관, 재외국민교육기관 및 기타 기관에 고용된 때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.
- ⑥ 이 학교법인 정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의 처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⑦ 공상 또는 특명에 의하여 휴가, 요양하는 자에게는 그 기간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.
- ⑧ 신병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하지 아니한 경우 3월까지의 보수 전액을, 4월-6월까지의 보수의 반액을 지급하고, 7월부터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15조(직위해제 기간중의 보수) ①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는 보수의 80%를 지급한다. 다만, 징계의결을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보수의 50%를 지급한다.

## 제 5 장 수 당

제16조(수당의 지급)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

있다.

② 2018.04.24 항 삭제

제17조(겸직수당) 2018.04.24 조 삭제

제18조(기타수당) 2018.04.24 조 삭제

제19조(연구보조비) 전임교원 및 직원에게는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. (2018.4.24 조 신설) (2018.6.22 자구수정)

① 연구보조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 (2018.6.22 자구수정)

② 제1항외에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기관평가보고서, 자체평가보고서, 연차보고서 등의 집필료 등을 연구수당으로 교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. (2018.6.22 항 추가) (2020.12.16 자구수정)

③ 전임교원 및 직원의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비율은 「소득세법시행령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(2018.6.22 자구수정)

제20조(보직수당) ① 교직원 중 보직자에게는 직책수행과 관리업무를 고려한 보직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

② 교직원이 보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상위보직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한다. (2018.04.24 조 신설)

제21조(직급보조비)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. 단, 휴직(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), 해외유학, 해외파견(1년 이내의 국외연수는 제외), 직위해제, 정직 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지급액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 (2018.04.24 조 신설)

제22조(명절휴가비) ① 교직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한다. 단, 휴직(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), 직위해제, 정직 중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지급일은 지급대상일이 속하는 월의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대상일 전후 15일 이내에 총장이 정하는 날로 한다. (2018.04.24 조 신설)

제23조(자녀학비보조수당) 교직원의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(2018.04.24 조 신설)(2020.12.16 개정)

제24조(식대보조비) 교직원 및 조교에게는 식대보조비를 지급한다. 단, 휴직(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), 해외유학, 해외파견(1년 이내의 국외연수는 제외), 직위해제, 정직 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(2018.04.24 조 신설)

제25조(육아휴직수당)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사유로 휴직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육아휴직수당의 지급한도와 방법 등은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하여 총장이 정한다. (2018.04.24 조 신설)

제26조(시간외근무수당)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사람과 주·야 교체근무자로서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수

있다.

③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(2018.04.24 조 신설)

제27조(일직수당) ① 일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일직근무자에게는 실비를 고려하여 지급액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지급 시기는 30일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.(2018.04.24 조 신설)(2021.4.22. 개정)

제28조(입시수당) 입학, 입시홍보 업무를 수행 또는 지원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(2018.04.24 조 신설)

제29조(심사·지도 및 시험수당 등)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항의 수당을 지급기준 지침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. (2018.6.22 조 신설)

① 심사·지도 및 시험수당 : 대학(원)생의 논문지도·논문심사, 신입교원초빙 논문심사, 정년 보장교원 임용 심사 등과 학생지도 시 지급할 수 있다.

② 시험수당 : 대학(원)생의 졸업과 관련하여 시험 출제·채점·감독한 경우 지급할 수 있다.

③ 특강수당 : 교육과정외 강의를 수행할 시 지급할 수 있다.

제30조(가족수당) ① 교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한다. 단, 휴직(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), 직위해제, 정직 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(2019.12.18.신설)

② 지급액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 (2019.12.18.신설)

제31조(법정선임수당) ① 법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업무에 선임된 자에게 법정선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지급 대상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하며, 휴직 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(2019.12.18.신설)

② 지급액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 (2019.12.18.신설)

제32조(출산장려금) 교직원이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(2020.12.16 조 신설)

제33조(연구우수 및 강의우수 포상금) 연구우수교원 및 강의우수교원으로 선정된 교원에게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(2020.12.16. 조 신설)

## 제 6 장 보 칙

제34조(퇴직금) 교직원의 퇴직금은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에 따른다. 단,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가톨릭꽃동네대학교에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의 퇴직금은 그 종료일을 기준하여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다. (2018.04.24 조 신설)(2018.6.22 자구수정)(2019.12.18.조 변경)(2021.6.22. 개정)

제35조(모범직원 포상금) 직원근무성적평정 심의 결과 모범직원에 선정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(2021.2.4. 신설)

제36조(우수제안 포상금) ①제안제도 심의 결과 우수제안자로 선정된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우수제안자 선정은 제안 제도 운영 내규, 포상금 지급 방법 및 금액은 제수당 지침을 따른다.(2021.2.4.신설)

제37조(정근수당)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(2021.2.4. 조

신설)

제38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교직원보수지급지침에 의거 지급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공무원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 (2018.04.24 자구수정)(2018.6.22 자구수정)(2019.12.18. 조 변경)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규정 시행일 이전 지급한 수당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## 교직원 급여(2018.6.22 삭제)

1. (2018.6.22 삭제)
2. 정근수당 (2018.6.22 삭제)
3. 강사료 (2018.6.22 삭제)